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현실화〉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08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5. 8.
3. 회 부 일 : 2025. 5.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개표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투·개표 관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종사자”라고 함)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7. (생략) ＜신설＞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46조의2에 따라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7조에 따른 투표사무원,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 및 제174조에 따른 개표사무원의 수당과 식비 ④ 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보다 「최저임금법」 제10조

현행	개정안
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 게만 지급한다.	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1.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과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2. 제3항제8호에 따른 투표관리관 · 사전투표관리관 · 투표사무원 ·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9만원으로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는 투표·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사전투표사무원이,¹⁾ 개표소에는 개표사무원이 각각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배치되어,²⁾ 선거인 명부 확인, 투표함 관리 및 이동, 개표업무 지원 등 선거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 활동을 수행함.

투·개표사무종사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은행법」 제2조에 의한 은행 직원, 공공기관·공공조합·지방공사 및 공단 직원, 그리고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으로 구성됨.³⁾

투·개표사무종사자 위촉 과정에서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이는 인력 및 행정자원에 대한 접근 용이성, 선거경험 축적에 따른 전문성, 행정업무와의 연계성 등에서 지방직 공무원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타 직군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실적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2. 각급학교의 교직원
 -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2) 「공직선거법」 제174조(개표사무원)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 3)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

《 최근 선거별 투·개표사무종사자 위촉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공공기관 직원	농수축협 등 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공정·중립 인사
선거	직무	소계	국가	지방	교원	직원					
8회 지선 (’22)	투표관리관	14,465	17	14,367	39	42	-	-	-	-	-
	투표사무원	191,978	3,952	79,145	10,072	11,528	1,068	2,643	2,133	3,742	77,695
	사전투표 관리관	7,102	-	7,102	-	-	-	-	-	-	-
	사전투표 사무원	103,220	1,324	60,543	539	2,614	74	1,151	316	1,327	35,332
	개표사무원	96,180	2,769	21,661	2,107	3,990	631	1,536	2,586	1,899	59,001
	합 계	412,945	8,062	182,818	12,757	18,174	1,773	5,330	5,035	6,968	172,028
22대 총선 (’24)	투표관리관	14,259	30	14,229	-	-	-	-	-	-	-
	투표사무원	125,295	2,542	62,181	6,509	9,223	586	2,612	1,598	2,944	37,100
	사전투표 관리관	7,130	-	7,130	-	-	-	-	-	-	-
	사전투표 사무원	103,237	2,009	70,891	714	3,067	86	2,066	534	1,647	22,223
	개표사무원	77,186	5,210	27,262	1,992	5,491	760	3,557	3,382	3,355	26,177
	합 계	327,107	9,791	181,693	9,215	17,781	1,432	8,235	5,514	7,946	85,500
21대 대선 (’25)	투표관리관	14,295	31	14,264	-	-	-	-	-	-	-
	투표사무원	125,316	3,333	63,661	7,485	12,279	431	3,194	994	2,546	31,393
	사전투표 관리관	7,136	-	7,136	-	-	-	-	-	-	-
	사전투표 사무원	104,556	1,444	73,691	442	2,892	48	871	277	915	23,976
	개표사무원	61,390	5,137	21,925	2,471	7,174	834	3,683	2,405	2,670	15,091
	합 계	312,693	9,945	180,677	10,398	22,345	1,313	7,748	3,676	6,131	70,460

*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은 연인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4항⁴⁾에 따라 투표·사전투표

· 개표참관인에게는 각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선거관리위

- 4)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에게는 9만원, 개표사무원에게는 7만 5천원의 수당이 각각 지급되며, 별도의 사례금과 식비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음.⁵⁾

《 선거사무종사자 수당·사례금·식비 지급 현황 》

(단위: 원)

선거	구분	직 책	수 당	사례금		식비	계
				기 본	한 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2)	사전 (1일차)	관리관	60,000	100,000	60,000	7,000×3식	241,000
		사무원	60,000	40,000	60,000	7,000×3식	181,000
		참관인	100,000		50,000	7,000×2식	164,000
	사전 (2일차)	관리관	60,000	100,000	150,000	7,000×3식	331,000
		사무원	60,000	40,000	150,000	7,000×3식	271,000
		참관인	100,000		50,000	7,000×2식	164,000
	선거일	관리관	60,000	100,000	150,000	7,000×3식	331,000
		사무원	60,000	40,000	150,000	7,000×3식	271,000
		참관인	100,000		50,000	7,000×2식	164,000
	개표	사무원	60,000	40,000		7,000×2식	114,000
		참관인	100,000			7,000×2식	114,00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4)	사전	관리관	90,000	100,000		7,000×3식	211,000
		사무원	90,000	40,000		7,000×3식	151,000
		참관인	100,000			7,000×2식	114,000
	선거일	관리관	90,000	100,000		7,000×3식	211,000
		사무원	90,000	40,000		7,000×3식	151,000
		참관인	100,000			7,000×2식	114,000
	개표	사무원	75,000			7,000×2식	89,000
		참관인	100,000			7,000×2식	114,000
제21대 대통령 선거 ('25)	사전	관리관	90,000	100,000		9,000×3식	217,000
		사무원	90,000	40,000		9,000×3식	157,000
		참관인	100,000			9,000×2식	118,000
	선거일	관리관	90,000	100,000	20,000	9,000×3식	237,000
		사무원	90,000	40,000	20,000	9,000×3식	177,000
		참관인	100,000			9,000×2식	118,000
	개표	사무원	75,000			9,000×2식	93,000
		참관인	100,000			9,000×2식	118,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최근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 2025년 6월)에서 투표관리관은 19~21만원, 투표사무원은 13~15만원, 투표참관인은 10만원, 개표사무원은 15만원(2일분), 개표참관인은 20만원(2일분)을 지급 받음.

선거사무종사자들은 선거일 새벽부터 늦은 밤 또는 익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책임감과 민원 응대, 법적 책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큰 근무 환경에 처해 있음.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현행 보상체계는 장시간·심야·휴일 근무 등 업무의 특수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지원 인력의 선거사무 기피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⁷⁾

이러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단순한 처우 문제를 넘어,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선거 행정의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⁸⁾

이에, 개정안은 선거사무종사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투표·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6) 뉴시스(2024.04.09.) “사전투표업무 공무원 사망…‘새벽 3시 반 기상, 14시간 근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409_0002693434

7) 한국경제(2024.04.10.) “‘하루종일 일하고 12만원 벌어요’...공무원들 한숨만 ‘폭폭’”,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01289i>

8) 노동법률신문(2025.04.21. “연이은 재·보궐선거에 ‘과로 표적’된 공무원…‘개선 없으면 다음 지선 보이콧’”,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42

선거사무종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특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의 임금 기준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⁹⁾을 가산한 금액을 수당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원활한 인력 확보와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수당 인상의 법제화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예산 확보 및 운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약 2,146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전국단위 선거가 집중되는 해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였음.

9)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

(단위: 백만원)

2026 (지선)	2027	2028 (국선)	2029	2030 (지선·대선)	합계	연평균
45,795	-	54,646	-	114,217	214,658	42,932

주: 1.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 인상(안 제122조의2제4항 신설)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 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사무원·사전투표참관인, 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 인원이 직전 공직선거의 인원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각각 14시간, 12시간,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선거 주기별로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과 지속 가능한 예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의 입법화가 실제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사무종사자 규모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직무별 책임과 난이도, 실질 노동강도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참관인 등 직무별로 법적·실무적 책임 수준과 근무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근무 시간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일선 현장과의 괴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선거사무종사자 직무별 주요 업무 》

구 분	주요 업무
투표·사전투표 관리관	○ 투표소 및 투표 운영 총괄 ○ 투표용지 및 투표함 등 선거 자재 확인 및 관리 ○ 사무원·참관인 교육 및 감독, 현장 질서유지 ○ 투표 개시·마감 선언 및 진행절차 관리 ○ 특수봉인 등 각종 봉인·기재 절차 시행 ○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 등 외부 협력 요청 ○ 투표록 작성, 각종 문서·투표함 전달과정 관리
투표·사전투표 사무원	○ 투표함·기표소 등 시설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투표함 봉인, 관리번호 확인 등 자재관리 지원 ○ 장애인·어르신 등 투표 약자 지원, 임시기표소 관리 ○ 투표지·기표소 관리 및 투표절차 안내·질서유지 ○ 위급상황 시 상황 보고 및 조치 지원
개표사무원	○ 투표함 접수 및 목록 확인 ○ 투표지 분류·정리·개함, 회송봉투 등 서류 처리 ○ 투표지 심사·집계 및 개표상황표 작성 ○ 후보자별 득표 검열·공표, 개표자료 보고 ○ 개표 종료 후 투표지 등 자료 포장·정리
투표·사전투표 참관인	○ 투표 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 이상 유무 검사 ○ 투표함 봉쇄·봉인 및 특수봉인지 서명 참여 ○ 투표용지 교부·투표상황 감시 ○ 부정투표 등 위법행위 감시 및 시정요구 ○ 투표함 이송 과정 참관
개표참관인	○ 투표함 인계·인수 과정 감시 ○ 개표과정 전반(분류, 집계 등) 확인·감시 ○ 개표부정 등 위법행위 감시 및 시정요구 ○ 개표 진행상황 및 개표자료 감시

특히, 개정안 적용 시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의 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투표관리관과 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은 더 높은 책임과 심야 근무 등 어려운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상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직무 간 불평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변화 》

(2025년 대선 기준)

구 분		수 당		
		현행(A)*	개정안(B)*	B-A(%)
사전 투표	관리관	19만원	21만원	2만원(11%)
	사무원	13만원	21만원	8만원(62%)
	참관인	10만원	21만원	11만원(110%)
선거일 투표	관리관	21만원	21만원	-
	사무원	15만원	21만원	6만원(40%)
	참관인	10만원	21만원	11만원(110%)
개표	사무원	15만원(2일)	18만원	-
	참관인	20만원(2일)	20만원	-

* 현행은 수당과 사례금을 더한 금액으로 함.

** 개정안은 “현행 수당”과 “최저임금(10,030원)×근무시간×1.5” 중 큰 값으로 하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 투표사무종사자: 14시간[투표시간(06:00~18:00) 및 전·후 1시간 근무]
- 개표사무종사자: 10시간[투표일 17:00~03:00(익일) 근무]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 소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직무별 특성과 난이도를 반영한 차등적 보상체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당국의 재정 상황과 정책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관리 인력의 수당을 법률에 명시하여 관련 예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점은 바람직하나, 수당 인상의 법정화가 재정 상황에 따른 투입 인력 규모의 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